

제조물책임법과 레미콘

본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에서 발췌한 자료로서 아직까지 레미콘관련 외국의 사례가 없어 레미콘의 제조물책임 적용에 있어 해석이 모호하나 레미콘도 제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대책이 요구되며 레미콘제품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편집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

I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제정의 의의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 (무과실책임제도 도입)

2.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의 제정과 시행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없으며,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3.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가) 제조물책임법과 타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

- 기존의 제도하에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지금

(표 1) 제조물 책임법과 타 손해배당 책임과의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여부	과실 有	과실불필요	과실불필요	과실 有	과실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손해	제품자체	보증내용	모든손해	확대손해

까지의 ①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②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던 것에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됨

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동산과 같은 의미

-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열과 같은 무형 에너지도 포함함. 즉, 동산에 해당하는 한 완성품인지 부품·원재료인지를 불문함

-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함

- ‘제조’라 함은 제품의 설계·제작·검사·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서비스를 제외함

- 따라서 레미콘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레미콘업체도 제조물 책임이 부여됨

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예외

- 부동산 :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은 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부동산의 일

부를 구성하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 적용대상

-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 제조, 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미가공된 농산물(임·축·수산물)은 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은 개별적으로 당해 제조물에 추가된 행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 사회통념

- 소프트웨어·정보 : 소프트웨어·정보 등은 지적재산물로 동산이 아니므로 제조물 대상이 아님

라) 제조물책임을 지는자

- 제조업자 : PL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業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한자와 수입한자

- 표시제조업자 :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자도 제조업자로 간주

- 공급업자 :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짐. 다만, 공급업자는 상당기간내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책임을 면함

마) 제조물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

-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됨.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손해 및 피해가 발생하여야 함.

- 결함 : 통상적으로 기대할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제조과정상 설계도나 시방서에 합치하지 않게 제조됨으로 안전치 못한 것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치 못한 것

· 표시상의 결함 :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인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음으로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

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① 제조업자가 당해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이것은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함.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KS규격 및 '품'자 마크는 비록 그 기준에 따랐다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아님

④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사)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아) 기타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음. 따라서 2002년 7월 1일 이후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 적용됨.

-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법원 판례의 경향으로 보아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사실상의 추정'이라함은 실제 재판에 있어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함

II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방안

1.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건설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 행위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부과

제조물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 수입, 표시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즉, 건설업체에서 단순히 제조업자가 제조한 건재·부재 및 설비기기를 부착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아니나, 건설현장에서 가공을 행했을 때는 제조자로 볼 수 있다.

나) 건설업자가 건재·설비를 수입한 경우, 제조물책임 부과

결합이 있는 건재·설비를 수입·시공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고 집행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수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조자의 범위를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확대된 손해

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 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우려

주택 분양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설비 등의 취급 설명서를 인도하지 않았거나 주의·경고를 소홀히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비기기의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주택 분양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불법행위책임)

라) PL소송에 의한 이미지 하락

소비자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행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 등의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마)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 존재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도 실질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해결비용 등이 있다. 또한,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리콜 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

의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PL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PL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2) PL 소송 가능성이 높은 사례

- 누수에 의한 재산 손상 : 방수재 업체의 PL책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추락, 끼임 등)

- 자동문

- 회전문

- 설비(조명, 전선 등)에 기인한 화재

- Built-in설비

- 급탕기

- Security 관련 설비

- 플랜트 공사

- 건설기계 : 건설현장에서 PL소송 제기 가능

(3)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PL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손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도 거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PL책임에 의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의 대책에 결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 주체간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발주자 우위의 규정이 많다. 따라서 공공공사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참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문서화 및 보관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 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전마다 정리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각종 안전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자재·설비업체의 PL책임을 계약서에 반영

건설업체(甲)는 자재·설비 공급업체(乙)와 계약시, 일방적으로 PL책임을 위임하는 계약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甲과 乙 어느 쪽으로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甲 측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에 甲과 乙 어느 쪽에서 최종적으로 부

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제조자인 乙이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요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 단, 보험 회사를 지정하거나, 보험 금액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재·설비업체와의 계약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안전 및 경고 표시의 철저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한다.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마) 클레임 창구의 개설 (PL센터의 설치)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부동산은 분쟁이 장기화

되고, 기업 대 소비자의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양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PL센터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주택의 결함 및 위해 정보를 접수하고, 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및 주택부품에 관한 클레임 상담, 취급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대한 상담,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바) 품질 관리 철저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법이나 재료·부품 등을 개선하고, TQC활동에 의해 시공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발주자나 구입자·이용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시공 과정에 피드백하여 공법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시공 통합일 경우에는 폐일제로설계 등과 같이 안전성을 높인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2. 건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1)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서 동산(動産)으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의 조성과 건축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각종의 건재·부재·

설비기기 등이 조립·접합 혹은 도포하여 구성된 것이다. 즉,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이다. 목재와 같은 천연물도 제재(製材)나 절단과 같은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제조물로 본다. 따라서 개개의 건재·부재·설비에 결함이 있던 경우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도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건재·설비의 대부분은 기타의 건재나 부품과 접합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능·성능도 단품(單品)으로서의 기능·성능보다도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에 기능·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수 재료의 경우, 단품으로서 방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방수 성능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만약, 누수가 생긴 경우, 구체의 시공, 설계, 바탕처리, 방수 시공 등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방수 성능이 좋지 않아 재산 등에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 공사를 한 건설회사와 방수 시공을 한 전문건설업자, 그리고 방수재 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수 공사 이외에도 바닥재나 계단재 등의 시공에 있어 미끄럼 저항성이 부족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유지보수시의 점검이나 수리 행위는 PL법의 대상외이다. 다만, 수리시에 자재나 부품을 교환했을 경우, 오래된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했다면 수리에 해당되나, 오래된 부품을 떼어내고 다른 형태의 부품으로 대

체하였다면 가공이 된다. 이 경우에는 가공을 한 사람이 PL책임을 진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나 유통기한과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법정 책임기간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의 보증(guarantee)이란 재질이나 시공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내에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나 교환, 환불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법정 책임기간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든지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조업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체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정 책임기간은 그 개시시점이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시이고, 그 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점에서 품질보증기간과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건재·설비업계 파급 효과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에 포함하는 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재·설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재·설비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우선 새로운 원가 상승 요인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같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PL보험료도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등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고성능 검사 기기의 도입, 리드 타임의 증가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창호류, 바닥재, 방수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승강기나 건설기계의 경우, 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로 사용 중에 유지보수나 관리 혹은 사용자가 이용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나, PL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제품 인도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출하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등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체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하도급 생산 체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물책임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지양하고, 대역도 방식으로 전환

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 생산으로 전환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도급자 또는 모기업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건재나 설비의 결함에 기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재·설비업계는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면에서 손해 배상 능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소송에 휘말린 기업의 경우, 비록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고객 이탈에 의하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권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3)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 제조업자는 그동안 관습화되어 있던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신속히 공급한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제조물책임법 시대에서 ‘좋은 제품’이란 그 제품의 사용자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건설회사 등에 단지 제품을 판매할 뿐이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최종 소비자(end user)도 시야에 넣어 판매나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수업체는 현재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증 상대방은 주로 수급업자였고, 발주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누수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수업체로서는 종래의 건설업자 지향에서 벗어나 발주자 및 소비

[표 2] 제조물책임법 대책의 개요

분 야	주 요 대 책	고 려 사 항
PL마인드와 PL대응체제	경영자의 PL마인드	경영방침, 경영자의 PL교육 수강
	직원에 대한 PL직무교육	PL전문가 양성, 전직원의 PL교육
	전사적인 PL대응체제	PL위원회 설치
사전에방대책	설계상의 결함방지대책	안전설계실시프로그램 채택
	제조상의 결함방지대책	협력업체에 대한 결함방지대책 포함
	지시경고상의 결함방지대책	보증서상의 결함방지대책 조립·설치상의 결함방지대책 사용·소비상의 결함방지대책 유지관리상의 결함방지대책 수리·점검상의 결함방지대책 폐기에 관한 결함방지대책
	판매, 설치, A/S 등의 결함방지대책	보관상의 결함방지대책 유통상(운송)의 결함방지대책 판매 행위상(판매원의 설명 등)의 결함방지대책 광고행위상의 결함방지대책
사후방어대책	클레임 처리체제	소비자상담실, 클레임사건의 피드백
	문서의 기록보존 관리	문서보관 규정
	결함제조물 회수 대책	리콜시스템의 훈련
	소송 대응 체제	변호사와 전문가 자문

자료 : www.pllawyer.co.kr/contents/article7.html

자 지향으로 보증 대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책은 크게 예방 대책, 제품 안전 대책, 소송 방어 대책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대응책을 살펴보면, <표-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하 건재·설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및 제조

제품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KS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결함이 있을 경우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부품을 선정하고, 설계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전에 위해가 큰 주요 부품은 수명이 긴 재료를 사용하고, 손모뎀 경우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부품이 위해가 큰가를 판정할 때에는 동종 제품의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제조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보완하는 한편, 제조 및 검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검

사 절차, 기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표준 시공법 및 취급설명서의 보급

건재·설비는 건축물에 사용된 후에 비로소 그 기능·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시공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시공 방법이 틀리거나 불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결함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재·설비 제조업자(혹은 판매대리점)는 그 제품의 시공업자, 나아가 구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시공관리에 대한 매뉴얼, 특히 결함 공사의 실례를 공표하고, 정확한 시공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건재·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기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의미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에 미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란 건재의 성능은 물론, 시공법도 통상의 시공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어떠한 건재·설비의 시공에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거나 작업량이 많게 된다면, 시공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유발되어 성능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건재·설비 개발에 있어서는 시공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품의 취급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분양업자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분양업자가 소비자에게 취급설명서를 건네지 않은 경우, 그것은 분양업자의 책임이 되고, 건재·설비업체는 반대로 책임

이 없는 것으로 된다.

다) 경고·표시의 명확화

제조물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경고·표시의 결함에 의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지시·설명을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취급 설명서나 경고라벨 등을 표시한 상표 표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하기 쉽다. 이 경우, 상표 표시업자는 PL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에도, 상표(brand)의 신뢰를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표시업자는 수탁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거래 계약서상에 제조원/수탁제조업자, 판매원/상표 표시업자 등을 표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전자재는 라이프사이클이 경과된 후에는 해체·폐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부적절한 폐기로 인하여 인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된 제조물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제조물의 폐기 방법 또는 폐기된 제조물의 사용 방법이 통상 예상되는 형태라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광고·홍보 활동에 의해 그 제품의 정확한 폐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 외주(外注) 원재료와 부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업자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타 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외주선)에 대하여도 부품이나 원재료의 설계·제도시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주선 혹은 하청업체에 대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납입시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에 의해 PL책임을 부과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원재료 제조업자나 부품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호 협력,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분담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나 자회사 등도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완제품의 위탁 제조나 부품 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마) 문서의 보관·관리 철저

제조업자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는 보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서류, 설계

도면, 품질관리 기록 등은 중요한 문건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PL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바) PL보험 가입

PL사고가 발생하면, 건재·설비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이 거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시에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과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다.

Ⅲ 레미콘과 제조물책임

1. 레미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레미콘도 원재료(시멘트, 모래, 자갈 등)를 배합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하나의 동산으로 제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부동산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법 제정 당시 분양물에 대해 적용하려던 시도는 있었다.

무엇보다 레미콘의 소비자가 일차적으로는 건설사(시공사)이지만 최종소비자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레미콘의 경우 외국의 사례에 나타난 바 없고, 레미콘 제품의 경우 KS기준을 상회한 제품을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제조물책임 법상 적용 대상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레미콘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에 대한 대책

레미콘의 경우 제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제조상의 결함

레미콘은 현재 KS기준에 따른 배합설계를 하고는 있으나 생산기계의 오작동 및 생산기술자의 착오 내지는 조작실수로 주문에 따른 규격과 상이하게 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레미콘생산설비에 대한 점검주기의 확대 및 조작자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제품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가공상의 결함

레미콘의 특성상 제조 후 타설하는게 통상적이겠지만 건설현장의 여건에 따라 혼화제 첨가를 할 경우 혼화제 첨가과정이 가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경우는 레미콘사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시공사 내지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혼화제 첨가전의 제품의 결함이 판명나게 되면 레미콘사가 제조물의 책임을 지게된다.

(3)표시상의 결함

현재 레미콘은 주문서에 기재된 규격 및 수량 등만 기재하고 있어 제품의 표시라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기존의 주문서 이외에 레미콘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준수(90분), 레미콘 타설시 유의사항,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한 고지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레미콘의 특성을 무시한 레미콘의

관리는 곧 제조업자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이다.

3. 레미콘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법상의 책임범위

(1)레미콘 제조업자의 책임

레미콘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레미콘의 책임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레미콘 제조업체는 제조시점부터 타설시점(슈트를 통해 배출)까지로 그 책임범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시공사)와의 책임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범위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레미콘사의 책임범위는 곧 '레미콘'이라는 제품에 대한 제조상, 가공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레미콘의 결함 = 제조물책임'이라는 등식이 나오겠다.

(2)입증책임에 따른 면책사항

레미콘의 결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레미콘사가 지므로 그 책임에 레미콘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레미콘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는 면책사항을 제시하자면,

- ①먼저 레미콘의 원재료 수입검사를 통한 철저한 원재료관리
- ②레미콘 제조시 제조설비 및 배합설계의 관리
- ③레미콘 제조후 품질시험 철저
- ④레미콘 판매시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한 유의사항 및 제품의 특성표시
- ⑤레미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문서관리 철저 및 담당자의 교육철저

(3) 레미콘의 품질관리 강화 및 PL보험가입

무엇보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관련하여 안정성에 기한 레미콘 제조로 소비자가 손해 및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레미콘제조에 있어 무엇보다 제품의 안정성에 기하여야 할 것이며, PL보험에 가입해두는 것 또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 참고 자료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 정보과(02-2110-5293)에 레미콘제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2002. 6. 28)한 내용입니다.

질의 1 :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가 제조물책임(PL)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레미콘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레미콘업체도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질의 2 : 제조물 결함의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지?

→ 법 원칙상 피해자에게 있으나, 재판부가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여 결함이 인정되면 그 반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 상기에서 레미콘은 KS기준을 상회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하자나 결함이 아니고, 설계상, 시공상, 감리자의 착오로 일어났다면 이러한 원인규명은 누가 지는지?

→ 원인규명은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측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레미콘은 건축자재 제조업에 속하므로 제조상의 하자가 없다면 면책이 되는 것인지?

→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뿐만 아니라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또는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제품에 대한 1차 수요자가 건설사인데 건설사들은 부동산이 PL법 적용 대상이 안된다며, 건축자재 업체에 책임전가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부당한 책임전가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6 : 당 협회에서 외국의 제조물책임(PL)법 관련하여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건축자재관련외국사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원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추후 관련 사례를 찾게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귀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제조물책임법은 그 성격이 사법이므로 그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위의 견해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